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0-169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'20. 5. 1.), '20. 7. 2. 부터 시행되어,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, 마포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(안 제3조)
- 다.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(안 제6조)
- 마.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(안 제7조)
- 바. 판매대행점·운영대행사의 협약 등(안 제8조)

##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2)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(개정안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0. 10. 8. ~ 10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 11. 03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일원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.

③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,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만원권
2. 5만원권

### 3. 10만원권

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.

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

2. 권면금액

3. 유효기간

4.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가맹점의 등록 등)**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
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

**제5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**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**제6조(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)**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.

**제7조(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)** ① 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판매대행점·운영대행사의 협약 등)**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,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마포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발생 (제7조제2항)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연 400억 발행
- 총 발행금액의 할인보전금 2%
- 추계기간: 5년(2021년부터 2025년까지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(2021년)	(2022년)	(2023년)	(2024년)	(2025년)	
세출	계	800	800	800	800	800	4,000
	할인보전금	800	800	800	800	800	4,000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- 마포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할인보전금 구비 예산 편성 필요

### 5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신영자 (☎ 8572)